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역예정자 전직 지원 범위 확대 등〉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40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전직지원 범위 확대(취업→취업 및 창업)	3
2) 전직지원교육 수행기관에 대한 위탁근거 신설	6
3) 전직지원 성과평가를 위한 4대보험 자료요청 근거 신설 ..	8
4)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여건 보장내용을 법률에 명시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
3. 회부연월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 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취업’에서 ‘취업 및 창업’으로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요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1) 전직지원 범위 확대(취업→취업 및 창업)

- 현행법 제46조의2¹⁾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u>취업</u>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2 (전직지원교육) ① ----- ----- ---- <u>취업 및 창업</u> ----- ----- ----- -----.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역

1)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할 수 있다.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내 교육 또는 위탁교육 형태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²⁾.

□ 한편, 국방부는 취업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창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³⁾에 근거하여 수행 중임.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은 「군인사법」 제 4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나, 당해 법 조항에는 창업 관련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지원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
- 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3)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이란 취업, 창업, 귀농·어(촌)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및 자격획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9.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8조 (교육의 분류 및 체계)** ① 전직 및 취업 지원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 중 교육과 전직지원기간 활용 교육으로 구분하여 집합교육(소집)·원격교육(비대면)을 실시한다.
1. 복무 중 교육 : 진로설계교육, 진로교육, 전직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일부),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청년장병 뉴스타트, **군내 창업지원 프로젝트**

창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⁴⁾.

특히 군인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60세가 아니라 장기복무심사나 계급정년 등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기본법」 제18조⁵⁾,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⁶⁾에서도 청년 창업 촉진 및 지원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창업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769호), 2023.9.26. 발의되었고 임기만료폐기됨.

5)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무조정실, 2020.12.23.

국무총리 주재,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였음.

2) 전직지원교육 수행기관에 대한 위탁근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현행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7)에 따라 국방부에서 국방전직교육원으로 전직지원 업무를 ‘위탁’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8)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 업무를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행정기관의 직무범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률로 정해져야 함9). 행정권한의 위탁은 그 권한의 주체 자체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10)에 따라 위탁은 법령의 근

7)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9)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거가 필요함.

반면,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 의와 책임이 원래의 행정기관에 귀속됨¹¹⁾.

□ 현재 국방전직교육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자체 명의로 전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인 바, 전직지원 업무를 시행령에서 ‘대행’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규정하여야 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국방부 및 법제처는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법률에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하기에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10)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11)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3.

3) 전직지원 성과평가를 위한 4대보험 자료요청 근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 및 창업 여부와 고용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는 수혜자의 전직성공수기 현상공모 등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어, 그 성과평가와 사후지원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직지원교육 수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해당 근로정보를 바탕으로 성과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개정안 제4항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4대보험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 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등)¹²⁾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사용 용처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¹³⁾ 역시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창업지원 등의 자격 확인과 제대군인의 생활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1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 (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소득금액증명·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생략)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음.

- 국방부는 전직지원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4)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여건 보장내용을 법률에 명시

현행	개정안
<신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현행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여건 보장 내용은 법률이 아닌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¹⁴⁾에 규정되어 있음.

- 1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⑤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교육기간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여건 보장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전역예정자의 경우에도 법률에 그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u>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u>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u>」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u>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u>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 ☐ 타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조항을 「군인사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보임.
- ☐ 국방부는 타 법률과의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